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시	2018. 6. 29.(금) / 총4매 (본문 3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영한, 서기관 심병섭, 주무관 이진준 ·☎ (044)201-3504, 3512, 3513		
관련 단체	대한건설협회	정보 관리실	·실장 강해성, 부장 노유선, 부장 이범호 ·☎ (02)3485-8321, 8323, 8338		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대우건설·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우수업체 2,676개사 선정...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공 입찰 시 우대

-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(주)대우건설이 98점,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(주)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'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, 2,676개 사를 우수업체(60점 이상)로 선정했다.
-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.

《 우수업체 우대현황 》

상호협력평가 점수	가산점					가 산
	조달청		지자체			시공능력평가액 (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)
	PQ 및 적격심사	종합심사	PQ	적격심사	종합평가	
95점 이상	3.0	0.20	2.0	3.0	0.5	6%
90점 이상 95점 미만	2.0	0.18				
80점 이상 90점 미만	1.5	0.16	1.5	2.2	0.4	5%
70점 이상 80점 미만	1.0	0.14	1.0	1.4	0.3	4%
60점 이상 70점 미만	0.5	0.12	0.5	0.5	0.2	3%

- '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'는 종합·전문건설업체 간, 대·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.
- 지난 '98년 제정된 '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'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,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(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)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.
-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, 하도급 실적, 협력업자 육성,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.

《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기준 》

구분 \ 평가분야	계	공동도급 실적	하도급 실적	협력업자 육성	신인도
대 기업	100점	10점	20점	58점	12점
중소기업	100점	-	25점	53점	22점

* 대기업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 업체(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6,000억 원 이상) 50개
 중소기업: 대기업 외의 종합건설업체 12,285개

-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,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(95점 이상)는 대기업 12개,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로서,
- 이 중에서 대기업은 (주)대우건설,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(주)이 최고점을 받았다.

《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》

구 분	총 계			대기업			중소기업		
	2018	2017	2016	2018	2017	2016	2018	2017	2016
95점 이상	214	179	177	12	10	8	202	169	169
90점 이상	389	429	370	16	23	16	373	406	354
80점 이상	815	821	819	11	9	13	804	812	806
70점 이상	743	737	794	1	1	1	742	736	793
60점 이상	515	514	511	2	1	1	513	513	510
소계 (60점 이상)	2,676	2,680	2,671	42	44	39	2,634	2,636	2,632
60점 미만	295	273	329	2	3	2	293	270	327
신청 업체수	2,971	2,953	3,000	44	47	41	2,927	2,636	2,959

※ '18년 우수업체(2,676개)는 전체 종합건설업체(12,335개)의 21.7%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(3점), 하도급 낙찰률 배점(5점) 신설,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(2점→4점)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”라며,
 - “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올해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정보 공개 > 행정정보공개 >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심병섭 서기관(☎ 044-201-3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

□ (근거) 국토부장관은 '99년부터 매년 6월말까지 종합·전문건설업체 간, 대·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(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), 대한건설협회에 위탁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배 점		비 고
	대기업	중소기업	
1. 공동도급 실적	<u>10점</u>	-	
가.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	(5점)		
나.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	(5점)		
2. 하도급 실적	<u>20점</u>	<u>25점</u>	
-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			
3. 협력업자 육성	<u>58점</u>	<u>53점</u>	
가. 협력업자 재무지원			
(1)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	<u>30점</u>	<u>30점</u>	
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	(15점)	(15점)	
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	(8점)	(8점)	
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	(5점)	(5점)	
④ 전자하도급계약	(2점)	(2점)	
(2) 협력업자 재무·교육 지원	<u>10점</u>	<u>10점</u>	
① 재무분야	(5점)	(5점)	
② 교육분야	(5점)	(5점)	
나.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	<u>10점</u>	<u>5점</u>	
다. 상생협의체 운영	<u>5점</u>	<u>5점</u>	
라.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	<u>3점</u>	<u>3점</u>	
4. 신인도	<u>12점</u>	<u>22점</u>	
가.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 관련 표창실적 등	(2점)	(2점)	
나.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감점	(10점)	(20점)	해당업체 감점
총 계	100점	100점	

※ 대기업: 토건공사업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(시공능력평가액 6,000억원 이상)
중소기업: 대기업 이외의 업체

□ 평가효과 : 우수업체 우대

상호협력평가 점수	가산점					가 산 시공능력평가액 (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)
	조달청		지자체			
	FQ 및 적격심사	종합심사	PQ	적격심사	종합평가	
95점 이상	3.0	0.20	2.0	3.0	0.5	6%
90점 이상 95점 미만	2.0	0.18				
80점 이상 90점 미만	1.5	0.16	1.5	2.2	0.4	5%
70점 이상 80점 미만	1.0	0.14	1.0	1.4	0.3	4%
60점 이상 70점 미만	0.5	0.12	0.5	0.5	0.2	3%

※ 60점 미만은 우수업체 대상이 아니며, 우대사항 없음